

제171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면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2
----------	------

제출년월일 : 2007. 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93호, 개정 2005.12.31)이 공포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1.1부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6.11.17 ~ 12.7)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방 등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주류전문점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별표1]”을 “별표1”로 한다.

제6조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별표2]”를 “별표2”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영·규칙 및 조례”를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방 등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주류전문점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

현행	개정안
③ ~ ④ (생략)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u>음식물쓰레기</u>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u>음식물쓰레기</u>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u>음식물쓰레기</u>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 2]</u> 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u>법·영·규칙 및 조례</u>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u>지방세법</u>의 규정에 따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u>음식물류폐기물</u>----- -----<u>음식물류폐기물</u>----- -----.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 -----<u>음식물류폐기물</u>-----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u>별표2</u>----- -----. ②-----<u>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u>----- ---「<u>지방세법</u>」-----.